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//www.mke.go.kr
'10년 9월 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무역정책과 윤종연 과장, 손연미 사무관(02-2110-5316)	

구매확인서 발급 On-line으로 일원화

- 지경부,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**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전면시행(2011.7.1일 시행예정) 계획 발표**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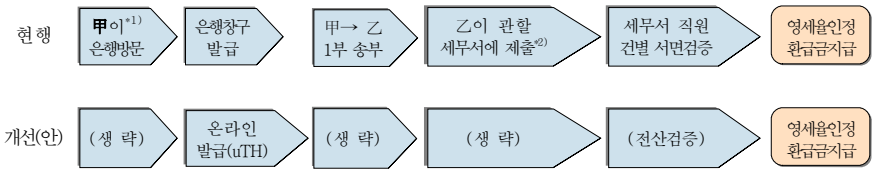
□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현재 on-line과 off-line을 통해 이원적으로 발급되던 **구매확인서를 온라인 발급으로 일원화**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음

□ 또한,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을 위한 **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개선**해 나가기로 하였음

○ 현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부가세 신고는 on-line으로 하더라도 영세율 증빙서류인 구매확인서는 대부분 off-line으로 제출할 수 밖에 없었으나,

○ 앞으로는 **구매확인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**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구매확인서 정보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됨

<현행 및 개선(안)의 구매확인서 처리과정 비교>



*1) 甲 : 수출기업 *2) 乙 : 수출용 원재료 등 공급자

□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「구매확인서 발급제도 개선방안」에 따르면,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전면시행을 위해,

○ 우선, 전자무역활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2010년말까지 추진·완료 하고,

○ 관련 규정(대외무역관리규정 등)을 정비하여 **2011.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**을 거친 후, **2011년 7월1일부터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전면시행을 실시한다**는 계획임

<구매확인서 발급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 주요 내용>

○ **(부가가치세 영세율첨부서류 제도개선)**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정보를 공유, 구매확인서 사본제출 의무 폐지

○ **(구매확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)**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, 국세청·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연계 등을 통한 구매확인서 관리 효율성 제고 추진

○ **(요금체계개선)** 발급건수가 적은 기업들도 용이하게 uTH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uTH이용요금 개선

○ **(발급지원서비스 실시)** 전자무역을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신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·송달해주는 지원 서비스 실시

□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, 그동안 구매확인서 서류 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은 물론, 외국환은행의 인력과 국세청의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
○ 또한, 우리나라 무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**전자무역의 활용비율도 약80%이상 증가할 것**으로 예상되며,

○ 국내외거래정보, 원재료정보 등 구매확인서에 포함되어 있는 **유용한 정보를** 원산지 증명 등에 **활용**할 수 있는 부수효과도 클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
[참고]

구매확인서 발급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

Ⅰ. 구매확인서 제도 개선 추진경위

□ **(Off-Line 및 EDI 발급 병행)** **「무역업무의 자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**('91.12.26)으로 Off-line과 함께 **EDI 방식으로도 구매확인서 발급** 허용

□ **(Off-Line, EDI 및 uTH 발급 병행)** **전자무역기반사업자**(KTNET)도 **구매확인서를 발급**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

- ㅇ **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**하여, **발급기관을 기존 외국환은행**에서 **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 지정**('08.11.5)
- ㅇ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발급업무 본격 시행('09.7.1)

□ **(On-Line 발급 일원화)** 국세청, 은행연합회등으로부터 구매확인서의 On-line 발급 일원화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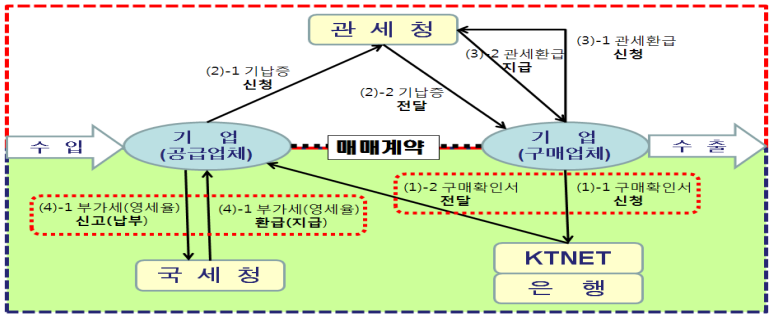
구매확인서 발급제도 개요

ㅇ **(개념)** 외화획득용 원료 및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등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**내국신용장*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**

* 내국신용장(Local L/C)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, 구매확인서는 수출보다 광의의 개념인 외화획득용 원료와 물품을 대상으로 발급

ㅇ **(근거법령)** 대외무역법 제18조, 시행령 제31조

ㅇ **(용도)**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서류,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증빙서류(필요시 제출), 수출실적증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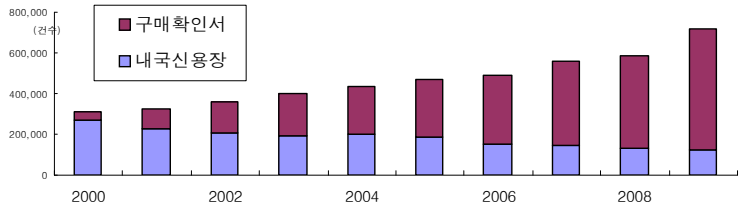


Ⅱ. 현황 및 문제점

1 구매확인서 발급 현황

□ **수출물품 조달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비율**

ㅇ '00년도이후 수출물품 등의 공급자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, 내국신용장 발급비율을 상회



《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이용현황(전자발급기준)》

□ **구매확인서 전자발급 현황**

ㅇ 최근 3년간 전체 구매확인서 발급건수 중 전자발급 비율이 꾸준히 증가

*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비율 : ('07)45.0%, ('08)47.2%, ('09)56.8%

ㅇ 전자발급의 대부분이 자사시스템(ERP)과 은행시스템을 직접 연결하여 발급(A,B,C유형)을 받고 있으며, uTH가 도입된 '07년 이후, uTH이용 전자발급(D유형) 건수가 급증

(건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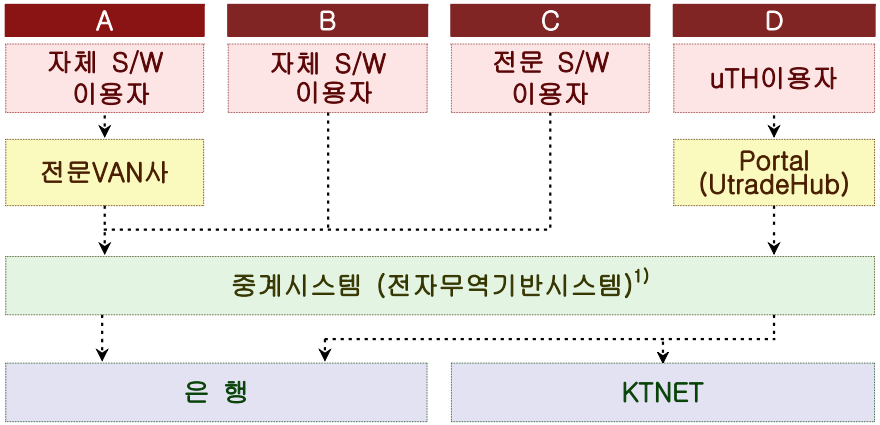
구 분	'06	'07	'08	'09
유형 D	-	1,413	13,079	79,154
유형 A	37,316	57,450	64,785	81,860
유형 B, C	302,753	349,784	371,459	432,125

<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방식>

□ 전자무역기반시스템을 통해 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(KTNET)가 발급업무수행

○ 중소기업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축한 uTH포털을 **통하여 전자발급**(D유형)

○ 중견기업·대기업은 내부전산시스템(ERP)과 은행시스템을 연동하여 구매확인서를 신청·발급(A,B,C유형)



1) 「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야 함

◆ A : 대기업이 그룹차원의 VAN사를 통해 회사내 전산관리시스템(ERP)와 전자무역 시스템의 지원을 받고 있음

◆ B : 기업 자체적으로 전산인력을 보유한 경우, ERP시스템과 전자무역 시스템의 연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형태

◆ C : 기업 자체적으로 전산인력은 보유하고 있으나, S/W 개발과 유지보수 등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

◆ D : 전자무역시스템을 개발하기가 부담스럽거나 업무량이 많지 않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uTH를 통해서 전자무역을 이용하는 형태 ('07.7월부터 시행)

2 구매확인서 발급제도의 문제점

□ 국세청 부가세 영세율 신고시 구매확인서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, **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실효성 저하**

○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On-Line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(전자신고 비율 95%이상),

○ 국세청시스템과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의 미연계로 **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되는 구매확인서**는 전자로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도 서류로 제출

□ 구매확인서 창구발급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

○ 구매확인서 **발급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**

-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되는 구매확인서 관련 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세무행정에 어려움

* 세무서 담당직원이 부가가치세신고 검토기간(1주일)동안 검토해야할 대상 기업은 1인당 대략 50~60개정도, 구매확인서 1건당 많은 품목을 포함 (대기업의 경우 구매확인서 1건에 1,000개이상의 품목(A4용지62장)을 포함)

- 통합관리 부재로 발급 후 해당 수출계약의 실제 이행여부 확인 등 **적절한 사후관리가 곤란**

○ 구매확인서 발급 및 검토에 따른 **인력 및 비용 과다**

- 은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서류와 세무서에 제출되는 구매확인서 사본 등 서류발급 및 보관에 과도한 비용 소요

* 은행을 통해 발급되는 서류 연간 약640만장, 세무서에 사본제출에 따른 서류는 약 340만장 소요

□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시 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 상존

○ 구매확인서 발급건수가 적은 영세기업들에게 불리한 **요금체계**

- uTH포털*을 통한 발급(D유형)의 **기본 수수료는** 은행창구를 통해 발급(Off-line)하는 경우보다 **저렴**하지만,

 * 은행과 시스템 연계가 어려운 영세기업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 활용이 가능하도록 **uTH포털 구축('07)**

- uTH사용료(월2만원, 정액) 등의 **비용이 추가 소요됨**으로써 **발급건수가 적은 기업의 경우 Off-line 발급이 더 유리**

○ 인터넷활용이 어려운 영세기업들의 **전자무역에 대한 부담감**

- 전자무역·인터넷활용 등 전산업무처리가 익숙하지 않은 영세기업들의 경우, **은행을 통한 창구발급을 선호**할 가능성

▸ 구매확인서 발급 간소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**구매확인서 전자발급 확대시행 필요**
▸ **관련 기관간 시스템 연결**을 통해 필요한 정보 공유
▸ 발급건수가 적은 영세기업들도 부담없이 전자무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**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요금체계 개선** 필요
▸ 영세기업을 위한 구매확인서 **발급지원서비스 도입** 필요

Ⅲ. 구매확인서 발급제도개선 추진계획

전자무역 활성화 및 구매확인서 발급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**전자발급 전면시행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시스템 개선**

1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전면시행 방안

□ 전자발급 전면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

○ **(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)** 구매확인서 발급신청방법,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조문 정리

○ **(부가가치세법 개정)**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 의무조항 삭제 필요

* 국세청과 협의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시행일에 시행되도록 추진

□ 추진일정 (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)

○ '10. 12월초 : 고시안 마련
○ '10. 12월초 : 규제심사
○ '10. 12월말 : 고시 관보게재

* 약 **6개월간의 유예기간** 뒤 **'11. 7. 1일부터 시행 계획**

2 전자발급 전면시행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

□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 개선

○ **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절차 개선 추진**

- 국세청과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간 전용선을 연결하여 온라인을 통한 **구매확인서 발급 정보 공유체제 구축**

- 사업자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, 구매확인서 발급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의 자동검색·확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

○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**'구매확인서 시스템' 구축 추진**

- 국세청·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하여 구매확인서 발급부터 사후관리(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, 수출실적이행 여부확인 등)까지 통합관리

□ uTH포털 이용요금체계 개편

○ uTH사용료 일부를 발급수수료에 포함시켜 건당 결제하는 시스템 도입

- **(현행 요금체계)** 발급수수료, 전송료, uTH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각 별도로 은행 또는 KTnet으로 요금을 지불

- **(개선방안)** uTH사용료와 전송료 일부를 발급수수료에 포함시킨 금액을 정하여 건당 결제하는 시스템 도입

□ **구매확인서 발급지원 서비스 실시**

○ 전자무역을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신하여 **구매확인서를 발급·전달해주는 지원서비스 실시**

○ 구매확인서 이용빈도가 낮아 uTH를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업체나, 인터넷 이용방법이 서투른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구매확인서 발급을 대행